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50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14. 11. 12.

판결 선고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65. 1. 22. 접수 제208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양주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3(대정 2년). 10. 30. 경기 양주군 E 답 6334평, F 전 130평, G 대 39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양주군 E 답 6334평은 행정관할구역변경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구리시 H 전 2093㎡가 되었고, 경기 양주군 F 전 130평은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구리시 I 전 430㎡가 되었으며, 경기 양주군 G 대 397평은 1959. 12. 20. 분할된 후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구리시 J 대 105평, K 전 174평, L 대 331㎡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65. 1.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구리시 L 대 331㎡에 관하여는 1985. 1. 17.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L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한편 D이 1936. 3. 29. 사망함으로써 D의 장남 N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1944. 3. 20. 사망함으로써 처인 O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O이 1953. 11. 1. 사망함으로써 O의 딸인 P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P이 1992. 10. 25. 사망함으로써 P의 자매인 원고와 Q가 P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는 D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여부 피고는 먼저, 피고의 부 R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50. 1. 5. 사망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D' 다음으로 'R'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부 R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대상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그의 부 R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R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1965. 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5. 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리시 H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는 1965. 1. 22.경부터, 구리시 J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는 1978. 9. 4.경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22. 무렵에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장영채

판사이영제

별지